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9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 4. 20. 개정, 2022. 4. 21. 시행)
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생리용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상의 '위생용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